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51517 [su20250901@gmail.c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51224 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1224

[넷길이 콩나물국밥]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넷길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넷길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39]

[전화번호 : 02-6406-7808]

[팩 스 : 0504-088-5808]

[가맹사업 담당부서 : 02-6406-7808]

목 차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주식회사 넷길이 | 넷길이 콩나물국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39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24.10.07 | 2024.11.11 | 박창미 | 02-6406-7808 | 0504-088-5808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9070163 | 사업자등록번호 | 482-81-03514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자 | 박창미/ 주식회사 넷길이 | 넷길이 콩나물국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39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박창미 | 02-6406-7808 | 0504-088-5808 |
| 사내이사 | 박화성/ 주식회사 넷길이 | 넷길이 콩나물국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39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박창미 | 02-6406-7808 | 0504-088-580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넛길이 콩나물국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넛길이 콩나물국밥 | 해당 없음 |
| 상 호 | 넛길이 콩나물국밥 점 | - |
| 상표(서비스표) | 넛길이 콩나물국밥 | 등록번호 4013094310000 등록일자 2017.12.04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년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2024년 | 234,815 | 179,331 | 55,484 | 221,113 | 52,864 | 45,484 |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 박창미 | 대표이사 | 2024.11.11.~현재까지 | 주식회사 넷길이 대표이사 | 대표 |
| 가맹사업 관련 | 박화성 | 사내이사 | 2024.11.11.~현재까지 | 주식회사 넷길이 사내이사 | 이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4년 12월 31일 | 2 | 0 | 10 |

[※ 사업연도가 연도 말일 아닌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넷길이 콩나물국밥 | 43류 | 등록일 2017.12.04 | 등록번호 40130943100 00 | 박화성 | 2027년 12월 04일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사업 현황

- [넷길이 콩나물국밥] 을 시작한 날: 2017.08.18.(가맹본부 설립전 가맹사업시작)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4.11.11)

2. [넷길이 콩나물국밥] 연혁

|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식회사 넷길이 | 넷길이 콩나물국밥 | 박창미 | 2017.08.18.~현재 까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39 |

3. [넷길이 콩나물국밥]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넷길이 콩나물국밥 | 대분류 |
| 한식 | | 콩나물 국밥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2.12.31. | | | 2023.12.31. | | | 2024.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 | 1 | 0 | 2 | 2 | 0 | 3 | 2 | 1 |
| 서울 | - | - | - | 1 | 1 | 0 | 2 | 1 | 1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1 | 1 | 0 | 1 | 1 | 0 | 1 | 1 | 0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2 | 1 | 0 | 0 | 0 | 0 | 1 |
| 2023 | 1 | 1 | 0 | 0 | 0 | 2 |
| 2024 | 2 | 0 | 0 | 0 | 0 | 2 |

6. [넷길이 콩나물국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4년 말 가맹점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전체 | 2 | 506,902 | 50,690 | 593,258 | 59,326 | 420,454 | 42,055 | |
| 서울 | 1 | 5곳미만 | | | | | | 5곳미만 |
| 부산 | - | 해당없음 | | | | | | |
| 대구 | - | 해당없음 | | | | | | |
| 인천 | - | 해당없음 | | | | | | |
| 광주 | - | 해당없음 | | | | | | |
| 대전 | - | 해당없음 | | | | | | |
| 울산 | - | 해당없음 | | | | | | |
| 세종 | - | 해당없음 | | | | | | |
| 경기 | 1 | 5곳미만 | | | | | | 5곳미만 |
| 강원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충북 | - | 해당없음 | | | | | |
| 충남 | - | 해당없음 | | | | | |
| 전북 | - | 해당없음 | | | | | |
| 전남 | - | 해당없음 | | | | | |
| 경북 | - | 해당없음 | | | | | |
| 경남 | - | 해당없음 | | | | | |
| 제주 | - | 해당없음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넷길이 콩나물국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4 | 2 | 1679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넷길이 콩나물국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 비고 |
|----|----|----|-------------------|----|
|----|----|----|-------------------|----|

| | | | 미포함) | | |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광고 | 소계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 TV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 라디오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 인터넷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관측 | 소계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 1월 행사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 | 추석 행사 | | 0 | 0 | 0 | 해당사항없음 |

11. 가맹금 예치

해당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11,000] | | | | (예외조건) |
| 가입비 | 11,00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가맹계약서 9조참조 | 가맹계약서 9조참조 |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
| 교육비 | 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가맹계약서 9조참조 | 가맹계약서 9조참조교육비로 비용소요 | 개점 전 교육 미이수시 반환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0] | | | |
| (현금)보증금 | 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1,000 |
| 가입비 | 11,000 |
| 교육비 | 0 |
| (현금)보증금 | 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99m2(약30)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m ² 당 금액 | 지급 기한 | 비고 |
|--------------------------|--------------------------|----------|-----------------------------|-------------|----|
| 총계 | | [82,000] | [2,732] | |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간판) | | 54,000 | 1,800 | 계약체결과 동시 | - |
| 설비/기기/ [별첨2] |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미지정) | 23,000 | 766 | | |
| 초도물품 [별첨3] | | 5,000 | 166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당사의 검수대가로 3.3m² 당 금삼십삼만원 (₩330,000 / VAT포함)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밖의 영업 신고, 어닝, 오디오, 스피커, 철거비용,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실의 배관공사, 가스/소방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CCTV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매장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비고 |
|-------|--|--|
| 가맹희망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p>최소실면적99m2 이상 (단,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상권 및 점포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 후 오픈 가능)</p> <p>"</p>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별첨

2,3]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 가맹본부 | 매월 POS매출 1.1% | 익월 5일 | 과오납시 반환 | 과오납시 반환 | 자동출금 조건 |
| POS 시스템 사용료 | 사용업체 미정 | 청구비 | 개별 협의 | 반환 안됨 | 소멸성 비용 | 매월 지급 |
| 리스료 | - | 해당 없음 | - | - | - | - |
| 광고·판촉 | 가맹본부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 반환 안됨 | 광고비로 비용소요 |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
| 개점후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1,100/1인당 | - | - | - | 경우에 따라 실비 지급 |
| 간판류 임차료 | - | 해당 없음 | - | - | -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업체 미정 | 가맹본부가 요구시 : VII.1 외 비용 부담 | - | -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

| | | | | | | |
|------|------|------|--------------------------|---|---|-------------------|
| | | | | | |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2024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해당없음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없음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용 | 시기 |
|-------|---------------------------|-----|
| 재고관리 |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필요시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필요시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레시피 등 영업매뉴얼 준수여부 및 운영 상태, 대 고객 서비스 제공 상태, 매장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점검/평가 결과 보수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이 운영에 대한 점검 기타 가맹점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정한 직원이 가맹점으로 방문하였을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

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 완료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넷길이 콩나물국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넷길이 콩나물국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p><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p>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의 경영합리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는 필요에 따라 운영매뉴얼을 변경,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 경우 새로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메뉴변경 및 신메뉴 출시 등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거래상대방 |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콩나물국밥 | 9,000 | 홈페이지에 공지 | 2025.06.01. 기준 |
| 황태콩나물국밥 | 11,500 | | |
| 오징어콩나물국밥 | 11,500 | | |
| 얼큰콩나물국밥 | 10,000 | | |
| 얼큰황태콩나물국밥 | 12,500 | | |
| 얼큰오징어콩나물국밥 | 12,500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품목 단위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콩나물국밥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넷길이 콩나물국밥 | 없음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넷길이 콩나물국밥]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 설정 방법 |
|-------------|---|---------------|
| 특수상권일 경우 | 특수상권 내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상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1km를 원칙으로 함(해당 지역 내 특수상권 제외) | |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푸드코트,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의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귀하의 배달영업활동 지역은 당사와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5조 제3항을 토대로 합의하여 설정한 영업지역으로 권장하며 현실적으로 배달어플등의 문제 등으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배달영업지역이 겹치는 경우 부득이하게 가맹점사업자간의 자율경쟁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간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보상금 지불 및 배달영업지역 조정 등 중재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넷길이 콩나물국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4 | 82 | 18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 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 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 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 |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
|---|
|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3항) |
|---|
|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 2. '을'이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 7. '갑'이 '을'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 8.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 9. '갑' 또는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가맹계약서 제22조 1항)

|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
|--|
|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 3. '을'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 6.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7.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
| 8.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 9. '을'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 10. '을'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 11. '을'이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12.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우

1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을'이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7.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9.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다)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 34조 4항) |
|--|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수정, 보충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가능시 필요한 절차 |
|----|----------|-------|------------|
| 환매 | 불가능 | - | 환매제도 운영 안함 |

| | | | |
|----|---------|-------------------|---|
| 양도 |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상속 |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금 중 가입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
| 대리경영 |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
| 위탁경영 | 불가능 | - |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넛길이 콩나물국밥]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 동안은 [넛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점포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넛길이 콩나물국밥]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경업금지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
| 소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8.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영업시간 | 권장 영업일수 | 비고 |
|---|---------|---------------------|
| 오전06:00~오후22:00 (점포여건 등 사유로 계약 체결시 당사와 협의가능) | 주7일 이상 |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정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비고 |
|---------|----------|--------------|
| 최소 1명 | 권장 | 99㎡(약30평) 기준 |

3)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
| 매장 청결(4항목)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친절도(5항목)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 품질 관리(7항목)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서비스의 표준화 |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
| 서비스 |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공동광고 | 상품, 브랜드, 가맹점모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 20% | 80% 전체가맹점이 균분함 |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 부담액 통지(광고1 개월 전)→통지 받 은 날로부터 2주 일 내 납입 |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순수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공동판촉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기획비용부담 | 제작비용 부담 상품할인 비용부담 |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 시 →행사에 따른 분 담금 납입 | 판촉행사 동의 절 차를 거친 후 전 체 가맹점 사업자 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 기획, 제작비용 이외는 협의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참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意的한 가맹점을 대상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광고/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을”은 독자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임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당해 가맹점 점포에서 [넷길이 콩나물국밥] 사업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위약벌로 당사에게 **금오천만원(W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남은 금원을 반환한다.

| 해약요청일자 | 위약벌 |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 최초예치가맹금의 10% |

| | |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 최초예치가맹금의 30% |
|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 최초예치가맹금의 50% |

3.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약벌로 당사에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영업양도)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제34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임의중단 및 폐업처리하거나 [넷길이 콩나물국밥]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 (₩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9.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10.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14p~15p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6 ~ 45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 ~ 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예치 | - 보증서발급 |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 ~ 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 ~ 5(2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 ~ 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점포환경 개선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 제외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및 내용 | 절차 | 비용부담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 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넷길이 콩나물국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개점 전 교육 |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 실습교육 (지정교육장)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지정교육장) | 신메뉴 개발 시 | 신메뉴 개발 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넷길이 콩나물국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개점 전 교육 | 10시간 | 0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3시간 | 1,100/인당 | 신메뉴 개발시 필수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

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34조 ③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5조 ②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서울 | 넷길이콩나물국밥 은평본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39 |
| | | |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1개월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6개월 미만 운영으로 매출액 기재 생략]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본부 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가맹희망자 주소 | | | |
| 수령일시 | 년 | 월 | 일 (오전,오후) 시 |
| 수령장소 | | | |
| 수령확인 |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 |
| | |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장인근에영업증인가맹점을아래표와 같이가맹희망자에게제공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No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 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가맹희망자 주소 | | | |
| 수령일시 | 년 | 월 | 일 (오전,오후) 시 |
| 수령장소 | | | |
| 수령확인 |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 |
| | |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장인근에영업중인가맹점을아래표와 같이가맹희망자에게제공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No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 필수 품목>

※ 귀하는 아래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규격과 수량은 가맹점 실측 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2]

*설비 및 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초도물품, 원부자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